# 운영위원회규정

제 정 2005. 8. 31 개 정(1) 2011. 9. 28 개 정(2) 2020. 9. 29 개 정(3) 2022. 5. 25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투자공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1.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위탁기관의 장
- 2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(이하 "민간위원"이라 한다) 6인 이내
- 3. 공사의 사장
-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·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.
- 제3조(자산위탁기관장의 위원자격 취득)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위탁기관의 장(이하 "위탁기관장"이라 한다)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기준금액"이라 한다)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였거나, 기준금액 이상을 위탁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한 때부터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에는 공사가 요청하는 시기에 자산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위탁기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시기에 자산을 위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탁자산의 회수 등으로 인해 위탁자산의 총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자산운용 결과에 따른 위탁자산의 일시적인 가치변동은 위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
- 제4조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  -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회의소집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되다.
  - ②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.
- **제6조(정기회의)** ①정기회의는 매분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며 소집일자는 위원장이 정한다.
  - ②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7조(임시회의)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②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③소집일자는 위원장이 정하되 소집절차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④제2항의 회의소집 요구는 회의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심의·의결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- 1. 정관의 변경
  - 2.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
  - 3.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 - 4.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5.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
  - 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- 7. 공사의 예산(추가경정사항을 포함한다)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- 8. 공사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  - 9.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
  - 10. 준법감시인의 임면
  - 11. 사장의 보수 및 수당

- 12.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
- 13.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
- 14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민간위원후보추천 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15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사장추천위원회"라 한다)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16.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. 다만, 법·시행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개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개정 내용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17. 그 밖에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의결방법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 - ③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면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 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제10조(의견진술) ①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  -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1조(의결권 행사 등의 제한) ①사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·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- 1. 사장의 임면
  - 2. 공사의 예산(추가경정 사항을 포함한다) 및 결산의 승인
  - 3.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
  - 4.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
  - 5. 그 밖에 사장의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  - ②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

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제12조(의사록)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·날인 또는 서명한다.
  - 1. 개회, 회의의 중지, 산회의 일시
  - 2. 회의장소
  - 3.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
  - 4.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
  - 5.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3조(위원회 사무보좌)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영관리부문장이 위원회 회의준비, 의사록 작성 등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를 한다.
- 제14조(보고 및 검사) ①사장은 공사의 재무상황, 영업실적 및 자산운용 현황을 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제15조(사장추천위원회) ①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②사장추천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사장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사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사의 비용으로 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  - ⑤사장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.
  - ⑥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, 제5조제1항, 제9조제2항, 제11조제2항 전단,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⑦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

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(전문가 위촉 및 자문기구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중요한 심의·의결사항을 미리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 구를 둘 수 있다.

제17조(위원 및 전문가의 수당 등) ①법 제9조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한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규정 제16조에 의해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0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그 대리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연간 일정 주기를 정하여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월정액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해외거주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세 칙상의 사장 출장여비에 준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비밀누설 금지 등) ①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,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아 활동한 자와 위원회의 자문기구에서 자문을 제공한 자(이하 "위원회 위원 등")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위원회 위원 등은 해당 임기 또는 활동 기간 동안에 취득한 공사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이를 이용하여 자신(자신이 속한 단체를 포함한다)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위원장은 제2항에서 규정된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해당 요청을 받은 위원회 위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